

제 569 호

1976. 8. 6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구자춘

편집 : 문화공보실장 조용하

전화 75-7834

인쇄 :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

전화 75-6090

시보

차례

◎조례

제 1060 호 : 서울특별시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부담금 부과

징수조례 3

제 1061 호 : 서울특별시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시행조례 ... 4

◎고시

제 183 호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 7

제 184 호 : 도시계획용도지구 (보존지구) 결정지침승인 및

건축제한고시 8

제 186 호 :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변경 결정 및 지침승인 9

제 187 호 : 도시계획 (재개발사업) 사업 시행허가 10

(이면 계속)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0802

제 188 호 : 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 실시계획인가.....	10
제 189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일부변경지적승인.....	12
제 190 호 : 도시 계획 사업 (특수녹지대 건설) 실시 계획 인가.....	13

◎ 공 고

제 182 호 : 1976년 하천 끌재 채취 허가에 정지 추가 공고.....	19
제 184 호 : 마포경찰서장 직인 개작 공고.....	19
제 185 호 : 생계진열 판매 행위 금지 공고.....	20
제 186 호 : 관리처분계획 일부변경 인가 및 분양지지적 공고	20
제 187 호 :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 품생산지 정업체 지정 공고.....	21

◎ 사 명 21

조 레

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
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부담금
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

1976. 8. 6

◎ 서울특별시조례 제 1060 호

**서울특별시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
사업부담금 부과징수조례**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127 조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 75 조 및 서울특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(이하 "구획정리"라 한다)에 소요되는 비용등 이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구획정리지구내 또는 인접지구내의 토지소유자로 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부담금부과총액) 부담금의 부과 총액은 구획정리사업 시행에 소요되

는 경비중 다음 각호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.

1. 보조금

2. 체비지 (보류지 포함) 매각수입

3. 기타수입

제 3 조 (부담금 부과기준) ① 부담금은 구획정리사업인가 전과 환지지정 당시의 토지평가액의 증차액 또는 환지지정 면적의 비례에 의하여 부과한다. 토지평가액 결정은 정부에서 조사 결정한 부동산 고시가격 및 현재 매매 선례를 표준으로 하여 동직선 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되 환지 처분시에는 노선 가산출 방법에 의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로서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 4 조 (부담금감면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토지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에 상당한 토지를 제공하였을 때

23-4

제 569 호

시 보

1976. 8. 6

<p>2. 구획정리를 위하여 노력이나 물건을 제공하였을 때</p> <p>3. 지방세법 제184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</p> <p>제5조(납입방법) 부담금의 부과시기, 납입기간, 납입방법, 납입장소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6조(정산) 구획정리로 인하여 수지정산액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부담금을 추징하거나 또는 환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7조(시행세칙)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지구의범위) 이 지구는 암사토지구획정리지구라 칭하고 사업시행지구(이하 "지구"라 한다)의 범위는 강남구 암사동, 친호동작일부 1,607,102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사업비) ①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채비지 배각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이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사업비의 일부를 빙제75조 및 영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부담금(이하 "부담금"이라 한다)으로 징수할 수 있다.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.</p> <p>제4조(종전토지) 환지예전지 지정 또는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토지의 각필와의 면적은 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</p>
<p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 <p>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</p> <p>서울특별시장 구자춘 [인]</p> <p>76. 8. 6</p> <p>⑥ 서울특별시조례제 1061호</p> <p>서울특별시 암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</p>	

및 임야대장면적에 의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한다)이 필요하여 별도로 실측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한것은 그 면적에 의한다.

제 5 조(토지의 가격) 사업시행에 따른 보지 각필의 가격평가는 한국감정원 토지평가사 또는 공인감정사의 감정 및 그 토지의 위치, 형상, 면적, 고지, 교통환경 등을 참작하여 시장이 정한다.

제 6 조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, 관리소홀로 인하여 폐손되었을 때에는 이를 보수 유지하여야 한다.

제 7 조(증명 및 분할) 사업기간내에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할 수 있다.

제 8 조(환지계획의 기준) ①지구의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주위에 의하여 법제 48조내지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

기준으로 종전토지 또는 그 위치근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3항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

②공공용지 및 집단체비지 지정으로 인하여 원위치 근처에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위치로 지정할 수 있다.

③법제 32 조에 의한 인가일에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인정하는 기존 건물들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④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체비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이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⑤실시계획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감보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사유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감보를 적용할 수 있으며 증환지된 경우에는 제5조에 의한 평정가격에 의하여 금전으로

정수한다.

⑥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익에 기여되는 사업에 필요한 대지로서 교부될 환지면적이 협소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수 없이 사업계획공고 기간내에 충환지 신고가 있을시는 특별히 충환지를 교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5항 단서 규정을 준용한다.

⑦기존 건물에 따른 전면도로가 사업계획상 도로로 될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존 전면도로가 확장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평균 폭원의 2분의 1을 연도부담으로 한다.

⑧공통 부담일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를 형상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, 차등을 두어 부담할 수 있다.

1. 1급지 : 공부상 대지 또는 기존 건물이 점유한 토지

2. 2급지 : 공부상 전인 토지

3. 3급지 : 공부상 단, 임야, 잡종지 등인 토지

4. 4급지 : 공부상 소지

5. 5급지 : 공부상 또는 현황상 도로구거 기타 공공의 용에 공하고 있는 토지

제9조 (가환지 예정지지정) 공공시설물의 설치를 위하여 설치예정지내의 기존건물 및 공작물의 이전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법제56조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에 앞서 가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.

제10조 (청산기준) ①환지처분에 의하여 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환지로 교부할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에 환지의 평가가격을 승한 금액으로 한다.

②법제68조에 의거 분할정수 또는 분할교부할 때에는 청산금액에 연 3%의 율을 승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다.

제11조 (환지처분) 환지처분은 환지계획 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한 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이 사업시행상 필요로 한 경우에는 공사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일부 환지처분 할 수 있다.

제 12 조 (등기 완료 후의 공지) 시장은 토지구획정리의 등기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환지설명서의 초본부지가래부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가래부서의 초본을 첨부하여 토지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(대리인 신고)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대리인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14 조 (토지소유자의 자비시공)

①법 제 99조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자비시공을 하고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계획에 맞추어 시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.

이때 계획준공이 되었을 때에는 공통부담을 체감 적용할 수 있다.

제 15 조 (규칙개정) 이 조례 시행에 편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고 시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3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5호 (76. 6. 21)로 시설 결정 및 지적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 건설부 고시 제 6호 (74. 1. 5)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와 동대문구 구청 사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 8. 9

서 울 특 별 시 장

23-8 제569호

시

보 1976. 8. 6

1. 사업시행지 : 동대문구회기동산 4-1
동대문구 이문동 264-202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:
도시계획사업 (학교)
경희대학교
3. 면적 및 규모 : 8,724 m²
4. 시행자 주소, 성명 : 동대문구
회기동 산 1
학교법인고황재단 이사장 오정명
5.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
가. 차수년월일 : 76. 8.
나. 준공예정일 : 77. 7. 31
6. 위치 및 계획 평면도 : 별첨
(도면생략)
7. 공사설계도면 : 별첨 (도면생략)
※ 도면은 서울특별시청과 동대문
구청에 보관함.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4호

도시계획용도지구 (보존지구) 결정
지적승인 및 건축제한 고시

1.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도지구
(보존지구)를 다음과 같이 결정
및 지적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
제 12조 및 동법 제 13조와 대통
령령 제 7753호 (75. 8. 22) 행정
권한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에
의거 이를 고시하고 도시계획용도
지구 (보존지구)에 대하여 도시계
획법 제 19조 제 3항에 의거
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을 다음과
같이 제한하고 이를 고시한다.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
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(출장소)
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1976. 8. 10

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용도지구 (보존지구) 결정 및 지적 승인조서

지구명	위 치	면 적	비 고
보존지구	강남구 장지동 문정동 일부	1,435,040 m ²	

3. 보존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및 시설 제한		① 서울특별시고시제186호	
가. 건축물 건축시의 제한		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	
(1) 용적률 : 20%이하		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	
(2) 전폐율 : 20%이하		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고	
(3) 최소대지면적 : 1,200㎡이상		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와 건설부고시 제434호(73.11.8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	
(4) 건축물높이 : 2층이상 불가 (7m미만)		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 도시계획과와 용산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	
나. 모타 및 고주파 발생장치가 설치되는 공장의 건축		1976. 8. 11	
다. 시설물에 대한 제한		서울특별시장	
(1) 고압선 및 모타회전을 위한 3상선의 전력선 시설		가. 도시계획시설(운동장) 결정 변경 및 지적승인	
(2) 가공선로(철조망, 송신용 앤이나 및 기타 철선)로써 길이 10m이상의 시설			
(3) 매설되는 일반 가정용을 제외한 수도관, 가스관, 전력용 케이블, 통신용 케이블의 시설			
(4) 용량 2,000ℓ이상의 물탱크 지상 설치			
(5) 굴뚝 철제 제품 및 콘크리트 석조 등의 탑으로서 높이 10m이상의 시설			
(6) 기타 전파 장애 요인이 내포된 시설물 등			

구분	시설명	위치	면적	비고
변경 (폐지)	운동장 (정구장)	용산구이촌 동302-63	6274㎡	

※ 별첨 도면 생략

23-10 제 569 호 시

보 1976. 8. 6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7 호

도시계획 (재개발사업) 사업시행허가

1. 전문부 고시 제 104호(76.7.14)
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1호
(76.8.4)로 재개발지구 결정 및
지적 고시된 청계천 7가 1.호
재개발지구에 대한 재개발 사업

시행을 도시계획법 제 24조 및
동법시행령 제 25조 및 행정권한
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
의거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
한다.

1976. 7. .

서울특별시장

<시행내용>

지구명	위치	지정면적	시행면적	시행자
청계천 7가 제 1재개발 지구	시내중구신당동 220-17번지일대	3,517 (1,063.9평)	3,507 (1,062.8평)	시내중구신당동 220-4지주 대표 홍인개발주식회사
제 2재개발 지구	시내중구신당동 217-15번지일대	810 (245평)	768 (231평)	대표 이사 윤영갑

○ 서울특별시 고시 제 188 호

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시설)

실시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2호
(76.7.13)로 시설결정 및 지적
승인된 당시 도시계획사업 (종합의료
시설)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
조와 동법 제 26조 및 전설부고시
제 123호 (73.4.4)의 규정에 의하
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 이를
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경비
국 도시계획과 및 보건사회국 의
약과 및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
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
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 8. 12

서울특별시장

- 사업시행지 : 강남구내곡동 산 12-
425 일대
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종합
의료시설)
명칭 : 시립아동병원

제 569 호 시

보 1976. 8. 6 23-11

3. 면적 및 규모	5.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
총면적 31,373 ㎡	가. 차수년월일 : 1976.8. .
대지조성면적 12,913 ㎡	나. 준공예정년월일 : 1977.9.30
병원신축 1동 1,257.1 ㎡	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
(영면적 5,203.65㎡)	소재지 지번, 지목, 소유권 이외의
간호원기숙사 1동 200 ㎡	권리 명세 : 별첨
(영면적 200 ㎡)	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
부속건물 1동 35.5 ㎡	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
4. 사업시행자주소, 성명 : 서울특별	주소, 성명 : 별첨
시장	

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유자	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
강남구내곡동	산12-425	임야	8,589 ㎡	우 순 월	근처당국, 경매신청, 가동기권
"	6-6	전	14 ㎡	문화재관리국	
"	6-7	"	399 ㎡	김 상 득	
"	6-28	"	109 ㎡	정 예 진	
"	6-27	"	170 ㎡	문화재관리국	불하 년부금 분납승인
"	6-29	"	35 ㎡	"	"
"	6-23	"	81 ㎡	"	"
"	6-35	"	40 ㎡	"	"
"	6-30	"	75 ㎡	"	"

0807

23-12 제 569 호

시

보 1976. 8. 6

토지또는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

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	소 유 자		관 계 인		비 고
				주 소	성 명	주 소	성 명	
강남구 내곡동	산12- 425	임야	8,589	동대문구제기동 682	우순필	종로구경운동 88	수협중앙회	근처 당첨
						동대문구제기동 631	원병태	
						동대문구제기동 631	홍신자	
	6-6	전	14	종로구창성동 117	문화재 관리국			
	6-7	▪	399	강남구양재동 5-272	김상득			
	6-28	▪	109	서대문구신사동 2-17	정예진			
	6-27	▪	170	종로구창성동 117	문화재 관리국	천북김제군백산면 장정리 62	이동섭	
	6-29	▪	35			도봉구미아동 579-20	최남훈	
	6-23	▪	81					
	6-35	▪	40					
	6-30	▪	75				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189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일부
변경 지적승인

1. 건설부 고시제 2948호(66.12.17)
로 지적승인된 당시 관내도시계획
시설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
의 일부 변경 지적 승인하였기

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

부 고시제 123호(73.4.4)의 권
한 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
한다.

2. 관계도면은 서울시도시계획과와
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
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
보이게 한다.

1976. 8. 12

서울특별시장

제 569 호

시

보

1976. 8. 6 23-13

0 지적 변경 조서								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	지적변경영장	지적변경기점	지적변경종점	비고
기정	종로	1류	47	20m	810m	미아동 791	수유동 472	
변경	"	"	"	"	"	"	"	위치변경

별첨 도면 표식과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0호

도시계획사업 (특수 녹지대
건설) 실시 계획인가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9호 (76.3.
24)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시
계획사업 (특수 녹지대)에 대하여
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
기 도시계획법 제 25조와 동법
제 26조 및 건설부고시 제 123호
(73.4.4)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
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산업국
도시가스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
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.

1976.8.12

서울특별시장

사업개요

가. 사업시행의 위치: 서울특별시
마포구 성산동 산 53 의 1 외 97 평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,
특수 녹지대

다. 사업 규모: 1) 일적:
362,580 m²

2) 1차 조성 범위:
253,776 m²

라. 사업 시행자: 서울특별시장

마. 착수 및 준공 예정일: 1) 착수:
76. 8. 15
2) 준공:
77. 5. 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의 소
재지: 별첨 토지조사서

사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
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
의한 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토지조사서, 끝.

0808

23-14 제569호

시

보

1976. 8. 6

토지세부 및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조서

1976. 3. 20 현재

번 호	원			수 용			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			비 고
	지·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구분	주 소	성 명	
1	성산동산52	임야	0.8400평				소유	외정부시외정부동 196	정 익 모	
2	성산동산53-1	-	5.9321	좌동	좌동	34,515평	공유	종로구화동 137-5	백윤석	
								종로구명륜3가 121-2	정 두 회	
								종로구명륜3가 2-8	이봉우	
3	" 53-2	"	0.1300	"	"	좌동	소유	서대문구대현동 90-9	안구 호	
4	" 53-5	"	0.8310	"	"	"	공유	종로구화동 137-5	백윤석	
								종로구명륜3가 121-2	정 두 회	
								종로구명륜3가 2-8	이봉우	
5	" 53-6	"	5.0000	"	"	638평	소유	용산구청파동 3가 118-28	박 철 용	근처당 재민원회 총무1기 53-6
6	" 53-7	"	5.5115	"	"	좌동	소유	광주시 호남동 23	이은용	
7	" 53-8	"	0.6614	"	"	"	공유	중구예장동 6-12	백 철	
								(종로구동숭동 2-10)	김 윤 태	
									김 윤 구	
8	" 54	"	0.4600	"	"	"	소유	마포구아현동 331-27	백갑진	가등기 마포구아현 신애기
9	" 55	"	0.0300	"	"	"		개성부북근정	김 시 선	
10	" 56	"	0.7700	"	"	"	소유	서대문구북아현동 163-48	최 만 휴	
11	" 57	"	1.0800	"	"	"		서대문구청진동 67-13	백봉현	
12	" 58	"	2.9100	"	"	8,049평	"	용산구효창동 5-17	최길준	가등기 용산구효창 신애기
13	상암동산54-18	"	1.1612	"	"	91평	"	마포구아현동 417-4	오한영	이신례

제 569 호 시

보 1976.3.6 23-15

번 호	원			수 용			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			비 고
	지 번	지 목	지 척	지 번	지 목	지 척	구분	주 소	성 명	
14	상암동산4-15	임야	0.0002	좌동	좌동	좌 동	소유		국(국부)	
15	" 4-17	"	1.0207	"	"	"	"		국(신림)	
16	" 4-19	"	0.1004	"	"	"	"		국(국부)	
17	" 4-20	"	0.0622				"	마포구이현동 417-4	오 한영 가등기	
18	" 4-23	"	1.8203	좌동	좌동	1.217 평	"	성동구신당동 353-60	홍숙향 이 실례	성동구동소문 동4가152-2
19	" 4-24	"	1.8911	"	"	좌동	"		국(국부)	
20	" 4-63	"	0.0118	"	"	"			김민희(부)	
21	" 4-64	"	0.0524	"	"	"			"	
22	" 4-123	"	0.0322				"	성동구신당동 253-40	홍숙향	
23	" 4-124	"	0.0202				"	마포구상암동산 4-11	김명수	
24	" 4-125	"	0.0126				"	" " 산4-125	박승희	
25	" 4-126	"	0.0227				"	성동구신당동 353-60	홍숙향	
26	" 4-128	"	0.0100				"	마포구상암동산 4-128	심순자	
27	" 4-129	"	0.0127				"	" " 4-129	신택희	
28	" 4-146	"	0.0021				"	" " 4-129	김도기	
29	" 4-147	"	0.0014	좌동	좌동	좌동			김진희(부)	
30	" 4-177	"	0.0413	"	"	"			국	
31	" 4-176	"	0.0406	"	"	"			"	
32	성진동87-1	전	487 평				소유	종로구이화동산 9-49	현정호	
33	" 514-2	답	46 평				"	" "	"	
34	" 511-3	전	103 평				"	용산구이태원동 271	김귀동	
35	" 514-4	답	36 평				"	군인아파트 10동 503호		
36	" 514-6	전	431 평			좌동	"	" " 496	이귀성	
									강인범	

23-16 제 569 호 시

보 1976.8.6

번 호	원			수 용			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			비 고
	지번	자목	지적	지번	자목	지적	구분	주 소	성 명	
37	서4동511-6	답	423 평				소유	성동구 현인동 711-229	김정식	
38	" - 7	전	103 "	좌동	좌동	좌 동	"	마포구 성산동 496	강인범	
39	" - 8 "		140 "	"	"	"	공유	서대문구 중동 58-13	이만례	
								"	장애자	
								"	장춘애	
40	" - 9	답	33 "	"	"	"	소유	" " 58	장윤석	
41	" - 10	대	452 "	"	"	"	"	용산구 한남동 759-9	권병호	근처당, 자생원 풀자로2가 11동 상업운행
42	" - 11	전	73 "	"	"	"	"	마포구 성산동 479	이재중	
43	" - 12 "		54 "	"	"	"	"	종로구 화동 137-5	백윤석	
44	" - 13 "		80 "	"	"	"	"	마포구 성산동 479	정연봉	
45	" - 14 "		"	"	"	"	"		한학수	
46	" - 15	지증거	189 "	"	"	"	"	영등포구 고척동 253-96	최윤석	
47	" - 16	전	380 "	"	"	"	"	서대문구 성산동 496	강인범	
48	" - 17 "		596 "	"	"	"	"	종로구 화동 137-5	백윤석	
49	" - 18 "		677 "	"	"	"	"	서대문구 성산동 479	정연봉	
50	" - 19 "		212 "	"	"	"	"	" 146	박영준	
51	" - 20 "		527 "	"	"	"	"	" "	"	
52	" - 21 "		431 "	"	"	"	"	" 49	강금복	압류: 서울시
53	" - 22 "		124 "	"	"	"	"	종로구 화동 137-5	백윤석	

번 호	원			수 용			소유자또는이해관계인			비 고
	지 번	자목	지 칙	지번	자목	지 칙	구분	주 소	성 명	
54	성산동511-23	전	341	좌동	좌동	좌동	소유	종로구화동 137-5	백윤석	
55	" " - 24 "		286	"	"	"	"	"	"	
56	" " - 25 "		26^	"	"	"	"	"	"	
57	" " - 25 "		347	"	"	"	"	서대문구성산동 49	이귀성	근처장 남대 문로2가5: 한국전력
58	" " - 17 "		355	"	"	"	"	영등포구고척동 123	김효배	
59	" " - 28	점증지	177	"	"	"	"	용산구용산동 2 가 8	이천국	
60	" " - 29 "		145	"	"	"	"	마포구성산동 511-29	유한수	
61	" " - 30	전	100				"	영등포구양평동 6가 65	김영석	
62	" 512- 1	대	316	"	좌동	좌동	"	마포구노고산동 31-8	황의경	
63	" " - 2	전	248	"	"	"	"	" " 498	정일찬	
64	" " - 3 "		446	"	"	"	"	성산동 505	조길성	
65	" " - 4 "		646	"	"	"	"	" " 479	이재승	
66	" 513- 1 "		591				"	성동구행당동 322	권수자	
67	" " - 2 "		721				"	종로구궁정동 1-2	박무신	
68	" " - 3	화전	301						한탁수	
69	" 514- 1	답	151				소유	종로구궁정동 1-2	박무신	
70	" " - 2	전	343				"	마포구성산동 496	강진빈	
71	" " - 3	답	41				"	" " 498	정일찬	
72	" " - 4	전	228				"	" " 479	이재승	
73	" " - 5 "		158	-			"	종로구이화동 산 9-49	현정호	

23-18

제 569 호

시

보

76.8.6

번 호	원			수 용			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			비 고
	지 번	지 목	지 적	지 번	지 목	지 적	구분	주 소	성 명	
74	성신동 515-5	담	1,097				소유	마포구 성산동 498	정인찬	
75	" 515-11	"	1,272				"	육천동 127-26	정인만	
76	" 515-12	"	334				"	마포구 성산동 479	이귀성	
77	" 515-13	"	1,011				"	용산구 강월동 33-2	윤일련	
78	" 515-14	"	2,416	좌동	좌동	좌동	"	마포구 성산동 26-2	김석원	
79	" 515-15	대	182	"	"	"	"	마포구 성산동 산 53	송창설	
								" 515-15 고석원		
								"	김정살	
								서대문구 북사파 178-3	김문수	
80	" 515-16	담	1,191				"	마포구 성산동 498	정인찬	
81	" 515-17	전	44				"	" 505	조질성	
82	" 515-18	남	1,349				"	종로구 궁정동 1-2	박무신	
83	" 516	"	629				"	성동구 행당동 322	권청자	
84	" 517-1	전	62	좌동	좌동	좌동	"	서대문구 연희동 산 5	김명섭	
85	" 517-2	대	61	"	"	"	"	용산구 용산동 2가 8	정영석	
86	" 517-3	"	118	"	"	"	"	"	정영석	
87	" 517-4	"	20	"	"	"	"	"	국(국세청)	(도)
88	" 518-1	"	85	"	"	"	"	"	정영석	
89	" 518-2	전	50	"	"	"	"	마포구 성산동 479	이재종	
90	" 518-1	집중	1,071				"	" 213	안필식	
91	" 519-2	전	109	"	"	"	"	" 496	강인범	
92	" 519-3		약 140	"		140				도로

번호	원			수 냉			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			비고
	지번	지목	지적	지번	지목	지적	구분	주 소	성 명	
93	성산동 528-1	대	767	좌동	좌동	좌동	소유	서대문구연희동 537-3	조명우	
94	" 520-2	전	619				"	마포구성산동 498	정인범	
95	" 521	"	180	좌동	좌동	좌동	"	" " 505	조길성	
96	" 522-2	대	142	"	"	"	"	" " 505	조길성	
97	" 524	전	409				"	" 상암동 54-20	이승훈	
98	상암동 48	"	198				"	종로구 누하동	윤상덕	
99	성산동 512-5	"	277	좌동	좌동	좌동	"	마포구성산동 505	조길성	

공 고

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2 호

1976년 하천물재 체취
허가 예정지 추가 공고

서울특별시 1976년 하천물재 체취
허가 예정지 추가 지역을 다음과
같이 공고한다.

1976. 8.

서 울 특 별 시 장

1. 하천명 : 한강 (서울특별시관내)

2. 지역및면적 : 가양지구 20,000평
(39,150m²)

3. 지역위치도 : 별첨도면과 같음

4. 위치도열람 : 양서 출장소

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4 호

마포경찰서장직인개각공고

마포 경찰서장 직인을 다음과 같
이 개각하였기 편인 규정 및 서울
특별시 공인조례 제9조에 의하여
이를 공고함.

1976. 8.

서 울 특 별 시 장

23-20 제 569 호 시

보 1976.6.6

1. 개각사용일시 : 76.8.12 00:00

2. 치인의 인영 : 마포경찰서장 치인

폐기 치인	개각 치인
	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85호
생계진열판매 행위 금지 공고
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15조 (수급조절)
규정에 의거 생계진열판매 행위 금지를
다음과 같이 공고함.
1976.8.11
서울특별시장
가. 목적 : ○ 닭고기 유통질서 확립
○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 방지
○ 밀도제 방지
나. 대상지역 : 서울특별시 전역
다. 실시기간 : 76.8.11 이후 계속 실시함.
라. 위반자조치 :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 15
조 위반으로 동법 제 22조
처용조치함.
마. 본 공고는 농수산부장관의 축산물
가공처리법 제 15조 조치에 따른
공고임.

◎ 서울특별시 공고제 186호
관리처분계획 일부 변경인가 및
분양지 지정 공고
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면적
제 1, 2구역 내 일부 분양지에 대한
관리처분계획을 변경코자 서울특별
시 공고제 162호 (76.7.20)로 공
람 공고한 바 있는 분양지에 대하여
도시계획법 제 86조 및 토지구획
정리사업법 제 47조 및 제 55조와
건설부고시 제 302호 (74.9.6)에
의거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 56조
에 따라 분양지를 변경 지정하였
기 동법 제 34조 규정에 의거 이
를 공고한다.
2. 분양지 지정서 및 도면은 서울특
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관할
구청에 비치하고 임유자 및 이해
관계인에게 보인다.

제 569 호 시 보 1976.8.6 23-71

3. 본 공고에 대한 서류증명은
토지점유자에게 개별통지 할것이나
미수령자에게는 본 공고로 가름
한다.

1976. 8. 12.

서 울 특 별 시 장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 생산
지정업체 지정요령 제3조의 규정에
의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
생산 지정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
하였기 이를 공고 한다.

1976. 8.

서 울 특 별 시 장

○ 서울특별시 공고 제 187 호

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품
생산지정업체 지정공고

1. 지 정 업 체

지정번호	기업체명	대표자	소재지	수출품명	76년수출목표액
1020	대일산업(주)	김영민	도농 수유동 367-1	저지 하이라일	\$1,931,000
979	홍안공업사	심용규	영등포 독산 1-8	낚시대부속품	\$400,000

사 령

○ 1976. 8. 6

중기본회 지방기재
사업소 기자보 송학근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,
2, 3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
처함.

영 선 과 기 자 실천구
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,
2 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에
처함.

녹 치 과 기 자 강희규
지방공무원법 제 69 조제 1 항제 1
. 2, 3 호의 규정에 의거
파면에 처함.

0812

23-22 제 569 호

시

보

1976.8.6

축산물 위생검사소 지방수의원 이명희 복장을 명함.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임봉 6월 에 처함.	서대문구 지방농림 기사보 윤명식 중구 지방농림 기사보 임영배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 마포구 근무를 명함.
관악구 지방농림 기사 이의성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임봉 3월 에 처함.	도봉구 지방농림 기사 김일근 구의수원지 사무소 지방토목 기사 김형분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의함.
영등포구 농림기사 윤강배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임봉 3월에 처함.	지방농림 기원보시보 나경문 관악구 근무를 명함.
녹지파 지방농림 기원보 유원준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	지방농림 기원보시보 오대근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.
도봉구 지방농림 기사 성태식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.	지방농림 기원보시보 정봉래 성동구 근무를 명함.
강남구 지방농림 기사보 황형구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제 1,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 에 처함.	지방토목 기원보시보 우건재 중구 근무를 명함. ◎ 1976. 8. 10 공원과 지방농림 기사 윤태경 조경과 조경 2계장에 보함.

제 569 호

시

보

1976.8.6 23-23

관 악 구 지방농림 기 기좌 이백근 공원과 공원 관리 계장에 보함. 어 립 이 지방농림 대 공원 기 기좌 이용재 관악구 근무를 명함.	영 등 포구 지방행정 사무관 허돈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. 도봉구 주사보 김영길 국가공무원법 제 78조제 1항제 1, 2 호의 규정에 의거 전체에 처함.
--	--

서 울 특 별 시 장

0813